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용반환의무 있는 정당의 의무위반 시 보조금 감액 등〉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22호)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2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비용반환의무 있는 정당의 의무위반 시 보조금 감액	4
2. 당선무효죄로 기소· 고발시 기탁금 반환, 선거비용 보전 유예 ..	10

I. 제안경위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조은희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11. 15.

다. 회 부 일 : 2024. 11. 18.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조은희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11. 15.

다. 회 부 일 : 2024.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법
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
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77명)에 달하는 상황임.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대부분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은 보전 대상 금액도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6호 신설).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법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 원 (77명)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및 제135조의2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비용반환의무 있는 정당의 의무위반 시 보조금 감액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직선거후보자의 당선무효로 인해 선거비용 등의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¹⁾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 ----- ----- -----.
1. ~ 5. (생략) ²⁾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제1항 후단 ³⁾ 에 따라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반환된 금액. 이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며, 회수 또는 감액하여야 할 금액이 분기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보다 큰 경우에는 2분기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회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5조에 따라 정당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간 지급액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함.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정 조건에 따라 선거비용 등을 보전하도록 하면서도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제26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제264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제265조)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정당(대통령선거, 비례대표선거) 또는 후보자(지역구선거)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이는 해당 비용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비용을 환수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임.⁶⁾

-
- 2)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에는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또는 청년추천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3)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 4) “선거공영제”란 국가 등이 나서서 선거운동 비용을 부담해줌으로써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함.(한국정치법학연구소, “선거비용 및 선거공영제 개선방안 연구”,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p.6) 「공직선거법」은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일정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고 있음.
 - 5) 각주 2번 참고

기탁금 및 선거보전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부의무가 있는 당해 정당·후보자가 기한 내에 기탁금이나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⁷⁾

그런데,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미반환자의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현행법상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미반환금이 정당의 경우 존재하지 않으나, 후보자 개인의 경우 80명의 미반환금을 합쳐 206억 1,800만원에 달하는 실정임.

6) 우리 헌법재판소도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하여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고 필요한 제재임을 판시한 바 있음. (헌재 2024.2.28. 선고 2021헌바302)

7)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미반환 현황 》

(인원: 명 / 금액: 백만원(2024. 7. 31. 현재))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미반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교육감 보궐선거 (2008년)	1	2,885	-	1,888	1	99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년)	6	543	6	543	-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008년)	9	991	9	991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년)	15	2,036	14	1,848	1	18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년)	33	3,841	24	2,947	9	89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년)	5	723	4	645	1	78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년)	75	2,601	74	2,537	1	6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77	12,707	71	5,569	6	7,13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97	10,392	75	5,401	22	4,99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0	4,811	42	2,249	18	2,56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45	5,148	24	1,442	21	3,706
총 계	423	46,678	343	26,060	80	20,618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후보자의 당선무효로 인해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모두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

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비용반환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비용반환 규정은 선거공영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용반환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헌법재판소 2024.2.28.선고 2021헌바30 》

“선거공영제는 선거 자체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선거경비를 개인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의 입후보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재 2010. 5. 27. 2008헌마491 참조).

구법 조항⁸⁾에 따른 제재는 선거범죄를 저질러 이미 선거라는 국가의 공적 업무를 저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자력이 부족한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또한, 이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를 배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을 해 준다면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당선가능성이 없는 후보자들 중에 선거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득표율을 초과하는 득표를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후보자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재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종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제재이다.”

8)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을 의미함.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비용반환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정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유사 개정안 현황 》

제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대표발의	주요 내용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204165호	24.09.23.	김종양의원	당선무효로 된 사람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
	제2205626호	24.11.15.	조은희의원	후보자가 기탁금 반환받거나 선거비용 보전받기 전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
	제2205961호	24.11.27.	주진우의원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해야 하는 정당 등이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당선무효죄로 기소·고발시 기탁금 반환, 선거비용 보전 유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당선무효죄(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⁹⁾)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의 반환이나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 ④ (생략)¹⁰⁾ <신설>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해당 규정에 따른 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는 고발된 때를 말한다. 이하 제135조의2제5항에서 같다)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기탁금을 지체 없이

9)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0)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⑤ (생략)¹¹⁾ 第135條의2(選舉費用補填의 제한) ① ~ ④ (생략)¹²⁾ <신설> ⑤ ~ ⑦ (생략)¹³⁾	<u>반환하여야 한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해당 규정에 따른 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하여 선거비용 전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이 경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선거비용을 지체 없이 보전하여야 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현행법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무분별한 후보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면서(법 제56조¹⁴⁾), 유효투표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경우

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삭제

11) ⑤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2)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규정된 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13) ⑤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5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4)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

등에 있어서는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57조).

이는 기탁금 제도의 취지가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 득표율 기준을 만족한 후보자의 경우 기탁금을 반환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책임있는 선거운동을 장려하고, 정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임.

또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유효투표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당해 지방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하면서(법 제122조의2),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있음(법 제135조의2).

이는 해당 비용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비용의 보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임.

그런데, 기탁금을 반환받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비용을 환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65조의2).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¹⁶⁾ 당선이 무효로 되더라도 반환 의무자의 재산이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미반환금이 206억 1,800만원에 달하는 실정임.¹⁷⁾

이에 개정안은 당선무효죄(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탁금의 반환이나 선거비용의 보전을 잠시 유예함으로써 당선이 무효로 될 경우에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일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정치신인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¹⁸⁾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의 기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만으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이 유예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탁금의 반환과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선이 무효로 될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성과 무죄추

15) 각주 2번, 6번 참고

16) 검토보고서 p.6. 참고

17) 검토보고서 p.7. 참고

18)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을 의미함.(네이버 지식백과)

정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¹⁹⁾

문 의 처
02)6788-5332

19) 의안번호 ZZ21067호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21.5.28.), p.29.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의견(2021.5.28.)

□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 (§ 265의2)

현 행 : 규정 없음.

개정 의견

- 반환기한까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인적사항·반환 사유·미반환금액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함.
 - ※ 추후 반환자,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채무가 소멸된 자는 제외
- 미반환사유 최초 발생 시 명단을 정당에 통보하고, 이후 자진납부, 반환완료로 변동되는 정보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미반환 사실이 있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에 해당선거와 미반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함.
 - ※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반환사실’도 기재하도록 함.
- 지방선거에서 징수위탁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263~§265)로 기소되거나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함.

제안 이유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직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당선무효 선거범죄로 기소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여 선거보전금 미반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